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48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양문석 · 최혁진 · 김문수
서미화 · 양부남 · 최민희
조계원 · 진선미 · 전용기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기사의 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 ①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② 열람차단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중전의 제17조의2)제1항 중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을 “청구를”로, “지체 없이”를 “즉시”로, “정정보도청구등이”를 “해당 청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정보도청구등이”를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또는 추후보도 청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을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이 법에”를 “제14조제1항에”로, “정정보도청구등과”를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정정보도등을”을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열람차단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7의2. “기사의 열람차단”이란 <u>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u>
18. ~ 21. (생 략) <u><신 설></u>	18. ~ 21.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 ① <u>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u>

	<u>십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u> <u>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u> <u>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u> <u>② 열람차단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u>	<u>제17조의3(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u> ----- ----- ----- ----- <u>청구를-----즉시-----</u> -----<u>해당 청구가----</u>

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또는 추후보도 청구가-----

③ -----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2항-----

-----.

제18조(조정신청) ① 제14조제1항에-----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② ~ ⑥ (생략) 제19조(조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u>정정보도등을</u>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 ⑩ (생략)	<u>따른 열람차단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u>-----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을</u>----- -----. ④ ~ ⑩ (현행과 같음)
--	--